

## 의료봉사 진료후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질의회신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병원운영 관계자들은 의료관계 법률과 제도를 적용하거나 해석하는데 있어 종종 어려움에 부딪치게 됩니다. 본 란은 병원경영에 있어 궁금한 점이나, 의료제도·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코너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언제든지 대한병원협회지 Q&A로 연락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 jyk@kha.or.kr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급여65720-1206(2002.8.16)]**

Q.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로부터 농어촌, 도서등 현지에서 무료의료봉사활동에 의한 진료를 받은후 계속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봉사 진료라는 확인만 있으면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2단계 요양급여가 가능한지 여부

A. 의료법 제30조제1항에 의거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의료봉사 진료확인을 동조 제4항에 의한 2단계 요양급여를 위한 요양급여의뢰서로 갈음하기에는 현행법령상 어려움이 있음.

